

[2017년 상반기, 24개 사업장, 65건, 손배청구 1867억, 가압류 180억]
헌법 위의 적폐 '손배가압류',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 일시 및 장소

6월 28일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

○ 주최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남신 손잡고 운영위원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발표 -----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2015년 발언 영상)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대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배춘환 손잡고 대표

피해노동현장 당사자 발언 ----- 각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피해조합원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성민 유성영동지회 지회장

이상목 하이디스지회 지회장

최정명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황호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영희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분회 정책국장

안영철 동양시멘트지부 법규부장

(이상 7개사업장 7명 발언)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 ----- 윤지영 변호사(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

질의응답

대정부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배경, 취지

1.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으로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되어 대규모 시민모금캠페인이 벌어진 바 있고, 사회적기구인 [손잡고]도 이 시기 각계각층의 참여로 출범했습니다.
2. 이후 3년간 손잡고는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입법청원 요구를 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 사안을 알리고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국회(2015, 대표발의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국회(2017,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달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를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런 가운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한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누적 청구금액 1,867억여원, 가압류 18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24개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위 집계내역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발생한 사건입니다(이전 정부 건은 사건 종료, 교섭 등으로 모두 종결). ‘국민기본권 보장’, ‘노동존중’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지난정권 적폐 중 하나입니다.
5. 본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 더욱 심각해진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새정부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손잡고와 양대노총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들과 함께 마련한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전달하고, 새정부와 함께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첨부 대정부 요구안

[2017년 상반기, 24개 사업장, 65건, 손배청구 1867억, 가압류 180억] 헌법 위의 적폐 ‘손배가압류’,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 박근혜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본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집계한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은 24개 사업장 65건, 누적청구금액 1,867억원, 가압류금액 180억원입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인 2017년 상반기 금액만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추이는 지난 정권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한 정권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급등 배경을 살펴보면,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이명박 정권동안 노무법인을 통한 전략적 노조파괴 기획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반복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배가압류는 노조파괴 전략으로 반복되며 대표적 탄압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을 보면 저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앞에 노동자들은 억울하고, 절망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국민이 살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생존과 직결된 일터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노동3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며 저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리행사의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생존위기에 내모는 극한 현실입니다. 손배가압류는 생존을 위해 저항한 사람들의 경제력마저 빼앗는 악마의 제도입니다.

그 동안 악마의 제도를 멈추기 위한 희생과 노력도 있었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죽음부터 가장 최근인 2015년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열사들이 ‘손배가압류가 생존을 위협하는 악마의 제도’라는 것을 희생으로 알렸습니다. 양대노총에서도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2014년에는 시민들이 모금캠페인인 <노란봉투캠페인>과 사회적 기구인 <손잡고>를 출범에 동참하고, 입법청원을 통해 법 개정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마의 제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넘어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는 손배가압류 제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단순히 ‘노사관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실상 방관하며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심지어 ILO의 권고마저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더 이상 사안을 ‘노사관계’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노동 정책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사법 판결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현

실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며, 시민모임 손잡고 와 양대노총은 과거정권의 적폐인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다음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답변으로 보냅니다.

1. 우리는 현재 누적된 1,86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와 해결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회사의 청구의 목적이 ‘배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임에도 쟁의기간 발생한 손실을 과도하게 책정해 청구하거나, ▲막대한 금액을 손배청구할 것을 예고하며 노동자를 위협하거나, ▲손배청구를 앞세워 근로자 지위확인 취하, 노동조합 탈퇴, 퇴사 등을 요구하는 등 2차 노동탄압을 벌이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손배소는 물질적, 심리적 차원에서 노동자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음에도 사실상 별다른 제지 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손배청구 금액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과도한 금액’이지만 자본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청구금액을 배상받지 않아도 존립에 위협이 없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과도한 청구금액에 따른 법률 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워 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의 적정성, 쟁의의 합법성 등은 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판을 통해 가려집니다. 대체로 오래 걸리는 노동민사사건의 특성 상 노동자들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초 쟁의 원인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있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양형이 낮고(벌금 3천만원 이하), 쟁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례가 많은 한국 노동현실 상에서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점을 회사에서 악용하는 사실이 ‘노조파괴 문건’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손배가압류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에 따라 드러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향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 침해와 노동탄압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손배가압류의 원인이 된 쟁의 사건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해외자본 기술유출’, 등 노사관계에서 풀어낼 수 없는 사안들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사안들은 지속적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격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노동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7년 6월 28일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당사자,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7 상반기 손배가압류 현황 및 쟁점

1. 2017년 현재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

※ 본 자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현장 사례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갖습니다. 손잡고는 추후 제보를 통해 양대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현장 사례 가운데 손배소 사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제보연락_02-725-4777/sonjabgo47@gmail.com).

1) 2017년도 상반기 집계 범위 : 사업장 수 집계 외 손배소 건수 별도 집계

(* 2017 상반기 기준 취하, 선고, 변제, 미집행금액 존재 시 집계 포함)

(* 지난 집계 마감 기준 2016.8.30. 노조가 승소했거나, 사측이 손배소 취하한 경우 제외)

- ① 취하 : 올해 취하한 부분은 집계 포함
- ② 선고 : 올해 선고한 부분 집계 포함
- ③ 미집행 : 판결 확정 후 집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손배로 인한 피해가 유효하다고 보고 집계 포함

2) 집계결과(2017.6 기준)

- 총 24개 사업장(민주노총 포함), 손해배상청구소송 65건
- 손해배상청구금액(누적치) 총 **186,764,149,085원**
- 가압류 금액 총 **17,972,502,147원**

2017년 6월 현재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24개 사업장, 65건, 총 청구금액 1,867억여 원에 달합니다. 가압류는 총 180억여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집계 사상 금액 면에서 최고 수치입니다. 아래 표-1의 연도별 민주노총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이후 사업장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일천억 원대에 진입한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최고치가 두 번 갱신되었습니다. 2016년 집계 기준과 비교해도 건수와 금액 모두 늘었습니다.

일부 손배소가 해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1심 승소 후 회사가 항소 취하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법적 해결을 통해 해소된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파인텍지회),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교섭으로 상호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해소했습니다.

2017년에도 해소된 사건보다는 추가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추가된 사업장으로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사무금융노조 JT 친애저축은행지회 등이 있고, 철노조조에 2016년 파업에 대한 소가 추가 확인되며, 사업장

수와 건 수가 늘었습니다.

3) 2017년 손배가압류 사례의 특징

2017년 추가된 손배청구 사례의 경우 ① 모욕, 명예훼손, 물리적 충돌 없는 업무방해 등 더 쉬워진 손해배상청구(하이디스), ②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금액확대(철도, 동양시멘트), ③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갑을오토텍) 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청구 사례 가운데 대학병원 최초로 경북대학병원분회에 손배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법원이 조정을 통해 특정 기간동안 금액을 정해두고 임금압류 조치한 사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3년간 30억원 배상하라’는 법원 조정으로 회사가 2016년 10월부터 손배 당사자 가운데 재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제하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잔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수당뿐 아니라 승소를 통한 체불임금, 법률비용까지 회사가 압류하고 있으며, 퇴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3년을 보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월세 임차보증금 가압류 사례가 등장했습니다(하이디스 지회).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임차보증금까지 가압류 대상에 올려두는 등 당사자 뿐 아니라 가정에 까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압류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표-1] 민주노총사업장 대상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액(2017년 추가)

(* 민주노총 2016 정책자료집 참조)

연도	손배청구총액	손배청구 사업장 수
2002. 6.	345억 원	39개
2003. 1.	402억 원	50개
2003.10.	575억 원	51개
2011. 5.	1,582억7천만 원	12개
2013. 1.	1,307억 원	16개
2014. 3.	1.691억6천만 원	17개
2015. 3.	1,691억 원	17개
2016. 8.	1,521억9,295만 원	20개(57건)
2017. 6.	1,867억6,415만 원	24개(65건)

[표-2] 민주노총사업장 산업별/지역별 손해배상가압류 현황(2017)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연맹	사업장수	건수	청구금액	선고금액	가압류액
금속	14	52	94,881,008,838	37,795,894,627	4,647,582,619
공공	4	7	65,397,968,000	641,857,168	10,484,919,528
언론	2	2	20,010,220,000	-	2,250,000,000
강원영동	1	1	5,020,780,228	-	590,000,000
울산	1	1	767,000,000		
사무금융	1	1	300,000,000	-	-
총연맹	1	1	387,172,019		-
계	24	65	186,764,149,085		17,972,502,147

[표-3] 민주노총사업장 사업장별 손해배상가압류 상세현황

(* 2017.6월 현재 기준 / 민주노총-손잡고 집계)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비고	
사업장	건수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계	24개	65	179,598,058,787	186,764,149,085		17,972,502,147	
쌍용차	3	17,413,036,100	12,193,036,100	7,830,436,100		금속노조, 연대자손배 계속, 조합원손배는 노사합의로 종결.	
KEC	3	30,638,500,000	14,838,500,000	3,058,550,000	50,000,000	최초청구 301억원 건 2016.10부터 3년간 30억원을 임금압류하는 것으로 법원조정	
한진중공업	2	15,812,000,000	15,812,000,000	5,912,000,000	-	2013년 판결, 집행하지 않고 있음	
보쉬전장	2	206,734,400	134,715,208			- 대법상고 진행	
유성기업	1	4,023,331,876	3,934,515,138	1,011,505,464	11,427,756	대법상고 진행	
상신브레이크	1	100,000,000	100,000,000	5,000,000	410,000,000	2016.2 판결확정됐으나,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음	
현대차	울산	16	28,412,095,146	28,412,095,146	18,181,906,689		8건 선고, 8건1심진행
	아산	9	1,629,837,804	1,629,837,804	320,000,000	40,000,000	1건 선고,
	전주	2	2,558,360,000	2,558,360,000		50,000,000	재판추정중,

기아차	지회	2	734,000,000	734,000,000	542,265,817		명보애드넷고공농성건, 2013년 불법파견 관련 라인중단 파업 건 2017.5 대법 기각 확정
	지부	3	391,000,000	391,000,000			2심, 회사항소
DKC		1	2,600,000,000	2,600,000,000	891,730,557	1,000,000,000	2014.2. 1심종결, 집행하지 않고 있음
하이디스지회		4	2,710,000,000	1,810,000,000	42,500,000	3,086,154,863	2017.1 모욕건 1심 250만원 판결, 노조 항소. 2017.5 명예훼손건 1심 3천만원 판결 노조 항소, 업무방해건 1심 진행중.
갑을오토텍지회		3	9,732,949,442	9,732,949,442			직장폐쇄 이전, 용역경비외주화 반대파업, 대체인력저지, 직장폐쇄 이후 점거까지 총 3건 1심 진행 중
아시아나항공		1	30,000,000	30,000,000			1심 제기
택시(완산교통)		1	330,000,000	210,000,000			1심 진행
철도		4	38,712,123,000	64,657,968,000	641,857,168	10,484,919,528	2009년 2건 2심, 1건 1심 진행 중, 2016년 파업건 143억+259억원 추가
문화방송		1	19,510,220,000	19,510,220,000		2,200,000,000	대법원 상고
대전일보		1	500,000,000	500,000,000		50,000,000	1심 진행
동양시멘트		1	1,599,699,000	5,020,780,228		590,000,000	1심 진행
울산과학대		1	767,000,000	767,000,000			천막농성건, 압류진행
경북대병원		1	500,000,000	500,000,000			1심진행중
JT친애저축은행		1	300,000,000	300,000,000			1심 기각, 사측 항소했으나, 6월 임단협 마무리하며 소취하 결정.
민주노총총연맹		1	387,172,019	387,172,019			민중총궐기 경찰손배

2. 법제도개선을 위한 쟁점

1) 노동3권 침해 및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 실제 효과 발휘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원천적으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선을 그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점거 등 쟁의방식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공정방송 요구 등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해 협소하게 규정해 불법으로 낙인찍거나 △공권력 개입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개개인에 묻는 등 여전히 쟁의활동 전반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 쟁의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이 말 그대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노동현장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 초창기 교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어, 교섭이 마무리되면 청구소송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손배소를 악용했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교섭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하여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 개인의 노동권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하는 것은 기본으로 나타납니다. ▲수십억 손해배상을 근거로 해서 자사의 '불법파견'을 무마하거나, '근로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도록 협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기도 하며, ▲노조해산 및 해고자복직투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납니다.
- 손배소는 창조건설팅으로 상징되는 노조파괴시나리오의 대표적 노조파괴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성기업, KEC, 보쉬전장 등 다수의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노조파괴 전략에 의해 손배가압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2) 소남용 수준의 손배청구와 받아주는 사법부의 문제

- 노조법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경우와는 달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쓰이는 경우 이는 권리 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으레 사측에 손

해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입니다.

- 최근에는 ▲‘구호’, ‘피켓’, ‘소식지’ 문구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빌미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청 노조가 원청의 이름을 조합명칭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두고 ‘이름값’을 손해청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결면 걸린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손해배상 청구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이는 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반증이며,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폭력이나 직접적 파괴행위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넘어 작은 문구 하나, 목소리조차 맘 놓고 낼 수 없는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3) 국가(경찰)의 손해청구 확산

- 국가(경찰)의 손해청구 사례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가가 노동자의 파업에 개입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2009년 쌍용차점거파업, 2011년 유성기업 파업 개입 등 공권력 개입에 의한 폭력적 진압으로 몇 해가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유성 기업의 경우 지회 차원에서 일부 인정된 금액을 갚는 방식으로 국가손배를 해소했지만, 쌍용차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손배소 금액을 감당 못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의 최근 사례와 같이 사측과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경찰에 의한 국가손배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후 시민들의 집회에 까지 적용되어 집회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중총궐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민주노총에 집회를 사유로 한 국가손배 사례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곧 4.16연대, 강정마을주민 등 고통을 호소하는 곳곳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무시하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4) 대법까지의 비용(긴 재판시간, 많은 법률비용)

- 손배소로 인한 고통을 가중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법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리고,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다” 손배소 피해 노동자들은 손배소를 시간과 돈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시간, 돈)을 지불할 능력이 많은 사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쌍용자동차, 현대차지부, KEC지회, 철도노조 등 주로 거론되는 손배소 사업장의 특징은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청구금액 못지않게 긴 소송기간을 거쳤다는 점인데, 대개 1심까지 길게는 6년이 걸리는 소송도 있습니다. 그 기간 막연히 금액이 주는 중압감도 문제지만, 손배 피해자들은 사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얻는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호소합니다.
- 더구나 소가에 따라 높아지는 소송비용으로 인해 재판을 지속하기도,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의 경우 2010년 파업에 대한 손해소 7건을 두고 총 1억원의 인지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1심 패소 후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3. 2017년 상반기 손배가압류 사례별 피해현황

1)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쌍용차	3	쌍용차지부조합원	5,000,000,000	5,000,000,000	3,311,400,000	-
		금속노조	10,000,000,000	5,500,000,000	3,311,400,000	-
		국가(경찰)손배	2,413,036,100	1,693,036,100	1,180,636,100	-
합계			17,413,036,100	12,193,036,100	7,803,436,100	-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09년 4월, 쌍용자동차 사측은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함.
- 2009년 5월, 노사정 협의회 등을 진행했으나 진척이 없었고, 노조는 공장점거, 회사는 직장 폐쇄함. 이후 7월과 8월 경찰을 투입해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파업과 농성으로 인한 업무 손실 △파업 지원 및 연대투쟁에 대해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 △경찰 침탈과정에 빚어진 경찰 장비 손상과 피해를 근거로 쌍용자동차 사측과 대한민국 정부, 경찰, 메리츠 화재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가압류 등 14건의 소송을 제기함.
- 메리츠 화재 건은 해당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 측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함
- 2015년 9월 16일 지부와 조합원에 대한 회사손배소 2심 패소
- 2015년 12월 말, 노노사 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일부 복직(순차적 복직 약속),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가압류 철회 약속. 2016년 초 조합원 및 연대자 일부에 대한 손배소 취하
- 그러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유지
- 2016년 5월 13일 2009년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 2심 11억8천여만원 판결.
- 2016년 6월 1일, 노조는 국가손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같은 시기 경찰도 쌍방 상고.

③ 현재 노조 상황

- 사측 손배는 상급단체에 대한 소 유지
- 국가 손배 사건은 대법원 계류 중, 지연이자 15%씩 추가되고 있음
- 2017년 4월 19명 복직, 현재 130명 복직대기자 남음

2) 금속노조 KEC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KEC	3	간부3인	500,000,000	500,000,000	50,000,000	50,000,000
		지회 및 조합원 88명	30,100,000,000	14,300,000,000	3,000,000,000	-
		간부1인	38,500,000	38,500,000	8,550,000	-
합계			30,638,500,000	14,838,500,000	3,058,550,000	-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사측은 교섭 해태로 일관함.
- 노동조합은 조정절차 및 적법한 쟁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월 9일 경고파업에 들어감.
- 회사는 노조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6월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조합의 농성과 파업을 유도함.
- 이 과정에서 KEC 사측은 용역경비업체와 인건비만 200억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의 파업과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시나리오를 진행함.
- 이후 '직장폐쇄 출구전략 로드맵'과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등 친기업 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탄압 기획 자료(노조파괴시나리오)가 발견됨.
- 사측은 해당 쟁의행위로 총 2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0년 6월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간부 3인에 사측이 5억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 간부 1인에 대해 회사 가임금 가압류. 대법원 상고고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패소했음.
- 금액은 2017년 초 손배소 당사자 2인이 해고 무효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체불임금에서 사측이 모두 공제함
- 사측의 교섭 해태와 직장폐쇄에 맞선 파업(2010.10.21.~2011.3.1)에 대해 KEC 사측 301억 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진행 과정에서 사측이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 이유와 금액산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정하여 현재 143억원까지 청구액이 감액됨.
- 301억원 손배 건은 1심 진행 6년차인 2016년 9월 법원의 권유로 조정절차 거쳐 '3년간 임금압류를 통해 30억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
- 회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며 퇴사를 종용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현재진행 중
- 이 외에 2013년 6월 회사의 구조고도화에 맞서 쟁의행위를 한 이유로 간부 1인에 3천8백5

십만원 손해배상 청구 해당 건은 1심에서 8백5십만원 판결, 항소 포기하고 배상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7년 1월 26일 정리하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 과정이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 받음.
- 해당 문건에는 ‘손배소 가압류로 조합의 자금줄 봉쇄’, ‘경제적 압박’ 등의 문구가 명시됨
- 그러나 손배소 조정결정 이후 내려진 늦은 판결로 인해 현재 임금압류 절차에 대해 조합원 들은 구제 기회를 놓침
- 현재 손배소 당사자 가운데 해고자와 퇴직자를 제외하고 2010년 10월부터 매달 임금압류 진행 중이며,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3)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한진중공업	2	간부1인	15,800,000,000	15,800,000,000	5,900,000,000	-
		지회	12,000,000	12,000,000	12,000,000	-
합계			15,812,000,000	15,812,000,000	5,912,000,000	-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0년 12월 15일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400명 정리해고를 통보함.
- 이에 2010년 12월 20일부터 노동조합은 전면파업 진행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회사는 2010년 파업에 대해 지회장과 민주노총에 15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추가로 2011년 집행부 파업 시 노무사무실 손괴를 이유로 지회에 1천2백만원 손배청구.
- 2012년 12월 최강서 열사가 사측의 부당한 탄압과 손배 청구에 맞서 자결함.
- 2013년 11월 고법에서 1천2백만원 건 배상 결정, 노조는 상고 포기,
- 2014년 1월 17일 158억원 건 손배 소송 1심 결과, 59억5천9백80만원이 인정됨. 사측과 노동조합은 항소를 포기. 이후 노사합의를 거쳐 집행기로 결정함.

③ 현재 노조 상황

- 현재 2건 모두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4)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보쉬전장	2	간부1인	110,000,000	37,980,808		-
		지회	96,734,400	96,734,400		-
합계			206,734,400	134,715,208		-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1년 회사는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음.
- 복수노조를 동원한 노조파괴 사업장. 2012년 교섭대표노조지위확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의 배타적 교섭권을 확인받았음에도 회사는 지회의 대표교섭 진행 요구를 묵살해옴. 또한 노조가 단협에 따라 전임자 수를 통보했음에도 사측은 무급전임자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 후 징계 해고함.
- 대법전까지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단협에도 불구하고 해고 조합원의 출입 통제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설치하게 되어 있는 CCTV를 사측이 몰래 일방 설치한 것은 물론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위한 현장통제용으로 활용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를 일삼음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1년 야간 조업 중단 및 잔업·특근 거부, 정문 출입 공사 방해에 대한 업무방해, 대표이사 차량 오물투척을 이유로 2억1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 두 건 모두 현재 항소 기각 판결 후 회사의 상고로 대법원 진행 중

5)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유성기업	1	지회 및 조합원	4,023,331,876	3,934,515,138	1,011,505,464	11,427,756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창조컨설팅, 복수노조를 동원한 노조파괴 사업장.
- 유성은 장시간 야간 노동으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7명의 조합원이 사망함. 장시간 심야 노동의 문제 개선을 위해 노사 양측은 2009년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합의하고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교섭을 앞두고 사측이 개입한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노조 탄압을 진행함.
- 2011년 노조는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며 노조가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로

- 전환시켜줄 것과 회사가 교섭에 제대로 응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 2011년 5월,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에 맞서 노동조합이 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을 두고, 경찰에 공권력 투입 요청함. 경찰은 같은 달 24일 공권력을 투입하고, 회사는 용역경비업체를 통해 폭력적 진압이 이뤄짐.
 - 파업 복귀 이후에도 기업노조와의 교섭에서는 처음부터 타결 시까지 대표이사가 참석하여협약안 체결 및 생산기여금을 타결한 반면, 지회에 대해서는 교섭해태, 대표자 차별, 단협안 차별과 조합활동 시간과 후생 복지 등 전면적인 차별로 일관함.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전에 창조컨설팅과 노동부 고위 관료의 사전교감 의혹이 불거진 바 있음.

② 손해소 진행 경과

- 회사는 2011년 3월 25일~5월 18일까지 파업에 대해 불법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이 기간 손해배상 40억원을 지회 및 조합원에게 청구, 진압에 개입한 경찰과 전의경 127명도 노조를 상대로 1억1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경찰 손해 건은 2014년 5월 30일, 1심에서 총 4천5백여만원 지급판결을 받음. 지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이자까지 총 5,700만원을 변제하여 사건 종결.
- 회사손배소 40억 건은 2015년 11월 2심에서 10억원 선고, 현재 쌍방 상고로 대법 진행 중.
- 한편, 2014년 1월 9일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가처분 판결로 70db이상 및 욕설비방모욕 관련 건당 70만원 추심금 발생. 조합비 통장에서 1차분 중 일정액을 추심해감(1차 추심금 1천5백만원, 2차 추심금 4천5백5십만원)

③ 현재 노조 상황

- 회사 손배 40억 원 건은 대법 계류 중
- 노조파괴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6년 3월 18일 한광호 조합원 자결
- 2017년 2월 17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법정구속 및 1년 6개월 실형 선고. 이 과정에서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한 노조파괴 인정됨.
- 2017년 3월 4일 한광호 열사 장례.
- 2017년 5월 19일 현대자동차(주) 및 임직원 4명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 결정. 지회는 나머지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황.

6)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상신브레이크	1	간부6인	100,000,000	100,000,000	5,000,000	-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파괴 사업장
- 2010년 조정 및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 획득했으나, 회사는 전임자 임금 문제와 공장신설 문제가 노사 간 쟁점인 점을 제기한 지방노동청의 공문을 근거로 불법파업으로 몰아감.
- 노조는 실제 교섭안에 전임자 임금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쟁의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 판례 등을 근거로 노조의 쟁의에 대해 적법한 쟁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냄.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합법적 쟁의를 불법으로 몰아 58일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회사는 2010년 쟁의에 대해 간부 6인에 1억, 지회와 해고자에 10억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4억1천만원 제기.
- 10억원 건은 2015년 대법에서 '손실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됨.
- 1억원 건은 2016년 2월 5일 1심판결 위자료 500만원. 이 사건은 해고자 손해배상과 동일하므로 각기 배상하지 않고 동일 사건으로 취급하여 사측에 변제토록 함.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5년 10억원 건에 대한 대법 판결로 손해배상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회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4억 1천만원에 대한 가압류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음
- 5명의 해고자 가운데 4명이 대법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는 해고기간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복귀가 아닌 징계를 예고함

7) 현대자동차지부 사내하청 비정규직지회 / 울산, 전주, 아산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울산	16	지회장, 금속노조위원장	100,000,000	100,000,000	107,045,705	
		지회 및 조합원	9,000,000,000	9,000,000,000	9,000,000,000	
		조합원	1,000,000,000	1,000,000,000	37,000,000	
		조합원	1,000,000,000	1,000,000,000	36,000,000	
		조합원	7,855,000,000	7,855,000,000	2,000,000,000	
		조합원	200,000,000	200,000,000	26,457,751	
		조합원	7,000,000,000	7,000,000,000	7,000,000,000	
		지회 및 간부	250,000,000	250,000,000		

		간부	11,181,048	11,181,048	1,860,984	
		지회 및 조합원	1,000,000,000	1,000,000,000		
		지회 및 조합원	300,000,000	300,000,000		
		지회 및 조합원	200,000,000	200,000,000		
		지회 및 조합원	100,191,803	100,191,803		
		금속노조 및 연대	200,000,000	200,000,000		
		조합원	157,274,067	157,274,067		
		조합원	38,448,228	38,448,228		
소계		28,412,095,146	28,412,095,146	18,208,364,440		
아산	9	조합원	12,595,960	12,595,960		
		조합원	9,184,993	9,184,993		
		조합원	24,243,946	24,243,946		
		조합원	10,000,000	10,000,000		
		조합원	36,644,408	36,644,408		
		조합원	17,674,797	17,674,797		
		조합원	29,493,700	29,493,700		
		조합원	1,170,000,000	1,170,000,000		
		조합원	320,000,000	320,000,000	320,000,000	40,000,000
소계		1,629,837,804	1,629,837,804	320,000,000	40,000,000	
전주	2	지회 및 간부	2,258,360,000	2,258,360,000		
		지회 및 조합원	300,000,000	300,000,000		50,000,000
	소계		2,558,360,000	2,558,360,000		5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0년, 2012년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음. 이에 지회는 판결이 나온 2010년과 2012년 각각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차는 교섭해태로 일관함. 이에 따라 지회는 조정절차이후, 파업에 돌입함.
- 2012년 파업은 희망버스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당시 고공농성 현장에 연대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렀으나, 이후 현대차는 연대한 시민에게까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현대차는 2010년, 2012년 파업을 두고 울산, 아산, 전주 등 비정규직지회와 사내하청 지회에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희망버스 등에 대한 업무방해를 이유로 4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당 금액은 지회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 연대한 시민에까지 청구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울산 사내하청지회의 파업 손실분을 10억에서 90억으로 증액 청구하는 등 청구 내역 변경하는 사례도 있음.
-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입금되는 개인 통장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거는 등 극악한 탄압 행태를 보임.
- 2016년, 사내하청지회 노사합의로 신규채용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측은 신규채용에 응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협의 제안. 본 협의에 응한 조합원들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함.
- 그러나 해당 협의는 최종 1인까지 협의를 목표로 손배는 유지되며, 연대파업한 현대차지부 정규직조합원과 희망버스 참여자에 대한 손배소 취하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 손해배상청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만큼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개인이나, 현대차로부터 개별 협의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에 대해서는 손배소를 취하해주지 않고 있음.
- 이 가운데 2017년 1월 25일, 울산지회 조합원 4인에 대한 90억 손해배상청구 건 부산고법 패소. 인지대 등 법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지회는 항소 포기.

③ 현재 노조 상황

- 최종 1인까지 손배청구가 유지되는 상황,
- 2017년 1월 25일, 90억원 판결을 받은 당사자 가운데 해고자가 아닌 지부 조합원의 경우 급여 압류 대상임
- 다른 소들도 1심과 2심이 연이어 진행 예정이나, 청구금액 자체가 크고, 현대차와 협의하지 않은 조합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회는 대체로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고 있음.

8) 기아자동차지부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기아차지부	2	조합원	201,000,000	201,000,000		
		조합원	89,000,000	89,000,000		
		조합원	101,000,000	101,000,000		
	소계		391,000,000	391,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3년 기아차 광주공장은 생산능력을 52만대에서 62만대로 확대하려는 계획 하에 인원충

- 당을 위한 신규채용을 강행함. 회사가 4월 12일에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김학종 당시 조직부장은 회사의 일방적 신규채용에 항의하여 분신을 시도함. 이에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들은 특별 교섭을 요구하며 라인을 중단하고 잔업을 거부함
- 한편,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총파업에 지부가 참여를 결정하자 회사는 이를 두고 지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3년 파업 건에 대해 간부와 조합원에 각 8천9백만원, 1억1백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함. 1심 진행 중
-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건'으로 지부와 분회 조합원에게 2억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2016년 5월 청구 기각되어 회사 항소함

③ 현재 노조 상황

- 각 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

9)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사내하청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사내하청지회	2	간부 및 조합원	670,000,000	670,000,000	542,265,817	
		간부 4인	64,000,000	64,000,000		
	소계		0	0	542,265,817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3년 7월 금속노조 지침으로 불법파견 철폐 파업이 시작, 지회(당시 분회)는 파업 참여함. 기아차는 조립 1라인 중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간부 4인에게 6천4백만원 손배 청구
- 한편, 2014년 9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하는 판결을 냄. 이에 대해 회사는 항소하고 기아차 정규직 지부와 '465명 신규채용' 방식에 합의함
-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사내하청 조합원 2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구)국가인권위 전광판 고공농성 진행. 이에, 전광판 주 명보애드넷이 기아차지부 화성사내하청분회 조합원 2인과 단식농성한 간부 1인에 6억7천여만원 손해배상 청구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3년 조립라인 중단 건, 2017년 5월 대법 최종 기각
- 2016년 6월 고공농성 건에 대해 1심 5억4천2백여만원 판결. 법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당사자 항소 포기.

③ 현재 노조 상황

- 고공농성 건을 두고 해고자 2인은 재산압류 진행, 재직자 1인은 2017년 초까지 임금압류 진행함.

10) 금속노조 DKC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신고금액	가압류
DKC	1	지회 및 조합원	2,600,000,000	2,600,000,000	891,730,557	1,00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포스코 사내 하청인 포항소재 DKC. 2008년 3월 14일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임단협을 개시했으나 사측은 보름 뒤, 118개 조항의 개악안을 내놓은 뒤로 교섭위원의 임시상근조차 인정하지 않고 노조간부에 대한 전환배치를 하는 등 노조탄압 진행함.
- 2008년 10월 1일, 공격적 직장 폐쇄를 단행함. 직장폐쇄에 맞서 사업장 안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을 경찰과 경비용역을 동원해 해산하는 등 폭력적 탄압 자행함.
- 직장폐쇄가 단행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2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5명의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10억의 가압류 청구. 법원은 사측이 청구한 가압류를 받아들임.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4년 2월, 1심에서 26억 가운데 8억9천여만원 판결.
- 이후 지회와 손배 당사자들은 법률비용, 노조와해 등으로 항소를 포기

③ 현재 노조 상황

- 현재 손배 판결 금액에 대해 집행하지 않고 있음.
- 사측은 복직자에 대한 손배 집행을 빌미로 노조활동 전면 봉쇄. 지회는 회사의 노조탈퇴 압력으로 전직 간부 1인만이 남아 간신히 유지시키고 있으며, 6년을 다뒀은 7인 해고자의 복직문제 등은 포기한 상태임.

11)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하이디스	4	지회장	400,000,000	400,000,000	30,000,000	2심 진행 중
		간부[2명]	100,000,000	100,000,000	2,500,000	2심 진행 중
		간부[5명]	2,200,000,000	1,300,000,000	1심 진행 중	통장 및 부동산[집]
		조합원[10명]	10,000,000	10,000,000	10,000,000	부동산[집] 1,200,000원
합계			2,710,000,000	1,810,000,000	42,500,000	-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4년 850억 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7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공장폐쇄와 정리해고 예고를 단행함.
- 지회는 전면적 투쟁을 선포, 국내 투쟁을 비롯한 2번의 대만 원정투쟁을 진행함.
- 회사는 330여 명 중 260여 명의 정리해고 통보하고, 2015년 4월 1일부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79명을 해고함.
- 지회는 해고 직후 공장을 사수와 비해고자인 조합원들의 노동절 집회 참석(2015.5.1.)을 근거로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명목으로 간부 및 조합원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함. 이후 다른 업무방해 건을 더해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함.
- 2015년 5월 11일, 해고 투쟁 중 배재형 전 지회장이 목숨을 끊는 사건 발생. 지회는 열사 투쟁 돌입하고 열사 유족까지 포함된 원정투쟁을 진행했으나 17일 여 만에 전원 강제추방 당함.
- 2015년 5월 전개한 열사투쟁 인터뷰와 기자회견 내용이 기사화됐다는 명목으로 사측은 지회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함.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2015.12. 사측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던 조합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의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함.
- 2016년 2월 1일부로 시설관리에 종사하던 15명도 해고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6년 11월 기숙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 패소. 120만원 부동산 압류 조치
- 2017년 1월 대만원정투쟁 모욕 1억 청구 건, 250만원 배상 판결, 노조 항소로 2심 진행
- 2017년 5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 1심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 노조 항소로 2심 진행
- 업무방해 22억원 건은 1심 진행 중
- 각 손배소 3건으로 일부 간부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중(총 30억원)

③ 현재 노조 상황

- 2차로 해고된 15명의 조합원 2016년 8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사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2017년 6월 16일 1차 해고 민사 1심 선고에서 부당해고 인정됨. 행정 1심 선고는 8월 예정.
- 2차 해고 민사, 행정 소송 진행 중

11)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갑을오토텍	1	지회 및 조합원	329,562,362	329,562,362		
		지회 및 조합원	1,403,387,080	1,403,387,080		
		지회 및 조합원	8,000,000,000	8,000,000,000		
합계			9,732,949,442	9,732,949,442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현재 갑을오토텍은 갑을상사그룹이 2009년 12월 23일 모던코리아로부터 인수한 회사임
- 갑을오토텍은 기업 인수와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사관계 재편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고, 2014년에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예지의 컨설팅을 통해 전략문건 Q-P시나리오를 수립함
-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주간연속 2교대제 전환을 위해 합의된 신규채용을 악용, 전직비리경찰과 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노조파괴용병을 사전모집하고 위장채용 함
- 이들을 동원해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 파괴를 위한 폭력을 행사함
- 2015년 6월 17일 테러에 가까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안구함몰, 뇌골절 등의 중상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
- 이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6월과 8월 두 차례의 합의를 통해 사태 일단락
-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노사합의 파기, 교섭거부, 일방적 외주용역경비 투입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필요이상의 관리직 사원을 대거 채용해 생산 업무에 투입하기 시작함
- 2016년 7월 관리직 사원의 신규채용 및 생산업무 투입이 노조법을 위반하는 대체인력, 대체근로임을 확인하고 고소고발 후 불법대체인력의 생산업무 투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철야농성 시작
- 이에 회사는 7월 26일 기다렸다는 듯 직장폐쇄 실시. 이후 용역 및 공권력 투입 시도 및

관리직 사원들을 구사대로 동원 지속적인 노조파괴 실행

- 2016년 11월 전 대표이사이자 그룹 부회장 법정구속. 재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유성기업 등 기 노조파괴가 진행된 사업장들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서 좀 더 진화한 노조파괴 시나리오(Q-P시나리오)에 의한 것임을 확인
-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수단으로 사용한 대체생산으로 인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양보와 노력을 통해 사태해결과 공장정상화에 힘써옴
- 사측은 2016년 1월~7월 노사합의를 위반한 용역경비를 막은 것에 대한 손배소, 2016년 7월 8일~25일 불법대체인력의 생산업무 투입저지에 대한 손배소, 직장폐쇄 기간의 손배소 등 총 3건 97억여원의 손배소를 제기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3건의 손배소 1심 진행 중
- 사측은 2016년 9월 대체인력투입저지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배소 14억여원에 대해 채권가압류도 제기했으나,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7년 4월 18일 김종중 조합원 SNS로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은 채 발견. 지회는 열사투쟁 돌입
- 갑을오토텍 사측 2017년 6월 21일 직장폐쇄 해지 실시. 지회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 실제 열사문제, 고용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출근이 시작되었음에도 공장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

12)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분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아시아나항공	1	분회 및 조합원	30,000,000	3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6년 3월 아시아나항공이 사내 청소용역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분회가 조합 명칭에 ‘아시아나’를 썼다는 이유로 분회와 조합원 7명에게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및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13) 공공운수노조 택시노조 전북지부 완산교통분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완산교통	1	지부/분회 및 조합원	330,000,000	21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완산교통분회 설립 이후 노조사무실 제공을 요구하자 사측이 이를 거부하여 분회는 사내 빈 공간에 천막으로 노조사무실 설치함
- 사측,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법원 가처분 인용을 결정
- 분회는 철탑 농성 돌입 후 노조사무실 제공 합의서 작성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천막농성장 1일당 30만원 집행

③ 현재 노조 상황

- 택시지부/지회 간부, 분회 조합원 등 6명에 대해 손배가압류 및 퇴직금 강제집행

14)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철도	4	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212명	1,100,342,000	1,100,342,000	45,000,000	
		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212명	7,030,010,000	7,030,010,000	596,857,168	-
		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186명	16,208,616,000	16,208,616,000		10,484,919,528
		노조, 위원장 및 조합원 25명	14,373,155,000	40,319,000,000		
합계			38,712,123,000	64,657,968,000	641,857,168	10,484,919,528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반대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파업함. 코레일은 이에 대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노조와 노조원 212명에 대해 안전운행투쟁 및 경고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1억원, 전면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0억3천만원을 제기함.
-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 코레일은 파업에 대한 영업손실 및 위자료 명목으로 노조와 조합원 186명에 대해 16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와 104억 8천여만원의 가압류를 제기.
- 특히 2013년 가압류 청구내역에 2009년 총파업 당시 손해배상청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과도하게 이중 청구되어 있음
- 2016년 코레일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결정하자 노조는 9월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 돌입. 코레일은 예측 못한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민형사상 소송 제기. 노조와 조합원 25명에 대해 1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후 청구취지 변경해 259억 추가제기해 총 403억원의 손해배상 진행 중.

② 손해배상 진행 경과

- 철도노조는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 △91명 해고자 임금 △사망조의금을 비롯한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또한 가압류된 조합 통장 중엔 조합원 별도 모금으로 적립한 부조금이 포함됨. 이로 인해 조합원의 유족 2명에게 2014년 2월중 지급예정이던 4천만원이 차단된 바 있음.
- 2009년 11억 손해배상은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 노동조합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판부 권고안을 노사 모두 수용하여 종결
- 2009년 70억 건은 2016년 12월 1심 5억 9천여만원 배상 판결. 쌍방 항소.
- 한편, 철도노조는 △ 2002년 46억원 손해 △ 2003년 가압류 24억 1천만원 △ 2006년 86억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및 지연 이자를 포함한 100억 800만원을 변제한 바 있으나, 이후 파업에도 코레일측은 지속적으로 수십~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함. 이는 값는 것이 손해배상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
- 회사는 2016년 파업에 대해 청구된 403억 원 건에 대해 2016년 파업 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403억 건은 1심 진행 중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6년 파업에 대해 쟁의 절차과 과정상 문제없는 합법 파업임을 강조하며, 징계와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
- 2009년, 2013년 건도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음

15)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MBC	1	본부 및 당시 집행부 15명	19,510,220,000	19,510,220,000		2,20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MBC 사측은 노동조합이 벌인 2012년 파업의 목적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확보’라는 점을 들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문제삼아 불법 파업으로 규정,
-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영업 손실 및 광고수익 감소, 시청률 감소 등에 따른 손해액 195억 1천22만원을 노동조합에 청구, 노조 조합비통장 22억원과 집행부 부동산 가압류 진행
- 또한 노조 간부 7명을 해고하는 것을 비롯하여 파업에 적극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단행함.
-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공정 언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도덕적 질타도 높았음.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4년 1월 14일 서울남부지법은 ‘공정방송 실현’을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인정하여 파업의 적법성을 인정함. 따라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을 기각 결정함.
- 2015년 6월 사측의 항소에 대해 고법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기각
- 사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진행 중
- 사측의 거듭된 상고에도 공정방송 실현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으로 본 1심과 2심 판결은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 됨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2년 파업으로 인한 각종 고소고발 건에 대해 노조가 거듭 승소하고 있으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한 조합원들에 대한 MBC측의 징계는 계속되고 있음.
- 더구나 사측이 무리하게 제기한 고소고발이 거듭 패소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법률비용이 회사 공금에서 지출되는 등 회사차원의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

16)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대전일보	1	노조간부 10명	500,000,000	500,000,000		5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대전일보사는 2015년 10월, 언론노조와 대전일보 노조의 각종 성명 등으로 인해 화보집 판매 부진 및 제작 중단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퇴직자를 포함한 노조간부 등 10명에게 총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송영훈 지부장에 5천만원 가압류 집행 부동산 등 가압류.
- 같은 시기 노조활동을 사유로 전 지부장 해고 등 인사 불이익.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1심 진행 중 회사 소 취하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6년 11월 노사합의로 민형사상 소 취하함.

17) 강원영동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동양시멘트	1	지부 및 조합원	1,599,699,000	5,020,780,228원		59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5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 위장도급 판정 및 결과 통지. 동일(주)과 (유)두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입사 때부터 동양시멘트(주)의 정규직이었다고 판정. 같은 날 동양시멘트는 동일(주)에 대해 도급계약 해지 통보
- 2015년 2월 17일, 동일(주)는 101명 노동자에 해고통지서 발송
- 2015년 3월, 동양시멘트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천막농성 및 상경투쟁 돌입하는 한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49광구 출근투쟁 등 진행
- 2015.03.16.~04.07. 출근투쟁 기간 동안 49광구 현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6.03.16. 동양시멘트(주)의 자회사인 다물제이호(주)가 동양시멘트지부와 조합원 24명에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015.08.11. 조합원 일부의 부동산과 채권, 임차보증금 등 총 5억9천만원의 가압류 집행.
- 청구당사자인 다물제이호(주)는 고용노동부의 진정조사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규정된 바 있음, 노동법상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동양시멘트 원청의 탈법행위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본 결과임.

- 2016년 9월, 회사는 해외 수출 손실 등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34억원의 손배소 청구금액을 추가, 총 50억원의 금액을 청구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50억원 손배소 건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등 쟁의와 관련해 행정, 민형사상 소송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 손배소 지연,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2017년 5월부터 변론 재개 됨. 현재 1심 진행 중.
- 동양시멘트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1,660,736,605원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항소하였으며 노조 또한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 2015.03.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고발장 접수, 수회에 걸친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이후 2016.03.03.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소”의견으로 중간착취 및 불법파견은 “불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함.
- 2016.12.06.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
- 2016.12.3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각하(불기소)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만 불구속구공판을 진행함.
- 2017.06.08. 파견법 위반 형사판결. 최종구(전 대표이사)·(주)삼표시멘트 각 1,500만원,신동희(동일 사장)·동일(주)·박상필(두성 사장)·(유)두성기업은 각 700만원 선고됨. (주)삼표시멘트 외 5 는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지만 불복하고 항소함.

③ 현재 노조 상황

- (주)삼표시멘트는 2017년 5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판결이행 협의를 위한 교섭을 노조에 요구하였지만 1심판결이행계획서를 노조에서 서면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원고(조합원)를 대상으로 개별협의를공문을 발송하여 합의금으로 해결하려하고 있음.
- 노조 탈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걸고 합의금 등 회유를 시도해, 일부 조합원 이탈
- 지부는 원청인 삼표시멘트의 행태를 두고 ‘정규직 복직 및 전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판단, 농성을 계속하며 판결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18) 울산지역본부 연대노조 울산대민들레분회(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노동조합)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울산과학대	1	간부 및 조합원	767,000,000	767,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4년 6월 16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울산대민들레분회 파업 돌입. 본관 앞 철야농성 시작, 같은 해 10월 20일, 본관 앞 천막농성 시작
- 2015년 5월 18일, 본관 앞 농성장 강제철거, 다음 날, 돌고래 분수대 앞 농성장 2차 강제철거 등 거듭된 철거로 인해 경찰연행 및 부상 다수 발생
- 2015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현재까지 노숙농성 중
-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2015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인당 30만원 씩 11일치 부과.
- 이후 정문 앞 농성장 부지가 학교부지로 인정되어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1인당 8천2백만원씩 가처분 및 압류

1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경북대병원	1	지부, 지부장 외 지부 및 분회 간부12명	500,000,000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4년 11월 26일,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으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맞서 쟁의행위 돌입. 35일(14. 11. 26. ~ 14. 12. 31)간 총파업 진행
- 2014년 12월 회사는 합법파업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 2017년 2월 로비 점거 농성 등을 전면적 배타적 점거라는 회사측 주장을 수용하여 불법으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항소 중
- 2017년 5월, 병원은 2014년 파업기간 중 점거 농성을 업무방해라 주장. 진료수익 감소 약 66억 중 파업참여자 인건비 약14억 원, 재료비 절감액 약23억 원을 공제하고 약28억 원을 손해를 입은 진료수익 결손금이라며 그 중 5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현재 1심 진행 중(소장 송달 중)

③ 현재 노조 상황

- 노조는 병원에서 당초 손해 액을 28억으로 책정함에 따라 추가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음.
- 노조는 형사 항소심판에서 로비 점거 부분을 무죄 주장하고 있음.

20) 사무금융노조 저축은행지부 JT친애저축은행지회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국가손배	1	간부 및 조합원	387,172,019	387,172,019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지회는 2016년 4월 동종업계 대비 35% 이상 적은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지회는 사측이 설립 5년 만에 252억원의 흑자를 내고도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쟁의에 나섬.
- 사측은 모바일 투표방식 등 쟁의행위의 절차를 문제삼으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기간 손실로 지회 및 조합원 18명에게 3억원을 손해배상청구함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2017년 5월 1심 기각. 재판부는 모바일 투표방식이 쟁의 절차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회사 항소

③ 현재 노조 상황

- 2017년 6월, 노사 임단협 진행. 노사 합의로 소 취하하며 종결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별			손배가압류금액			
사업장	건수	대상	최초청구금액	청구취지변경액	선고금액	가압류
국가손배	1	간부 및 조합원	387,172,019	387,172,019		

① 쟁의가 발생한 배경 및 사건 개요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간주, 민주노총을 투쟁본부의 주도단체로 판단하고 경찰이 민주노총과 간부, 조합원에게 국가손배 청구.
- 손해액 3억4천여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4천6백만원(전익경-경찰 등 선정당사자 1인과 선장자 91명에 각 50만원 씩) 배상하라고 요구

② 손배소 진행 경과

- 1심 계류 중.

③ 현재 노조 상황

- 민중총궐기 건으로 한상균 위원장(징역5년)을 포함해 간부 다수 구속수감
- 2017년 한상균 위원장 징역 3년 형 확정
- 형사 유죄 확정으로 차후 민사건도 재판 진행될 것으로 봄.

질의 응답